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14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 김상훈·강대식·김소희

김선교 • 서명옥 • 고동진

박충권 • 이달희 • 박수영

권영진 · 신동욱 · 이헌승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,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,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 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,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5조 및 제31조).

법률 제 호
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"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- 2. 5급 이하의 군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제31조 본문 중 "한다"를 "하되, 자녀가 2명인 군무원의 정년은 61세, 자녀가 3명인 군무원의 정년은 62세, 자녀가 4명 이상인 군무원의 정년은 63세로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5조(승진) ① (생 략) 제15조(승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-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일반군무원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. <신 설> 1.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2. 5급 이하의 군무원으로서 3 <신 설>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③ • ④ (생 략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제31조(정년) 군무원의 정년은 60 제31조(정년) -----세로 한다. 다만, 전시・사변 -----하되, 자녀가 2명인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군무원의 정년은 61세, 자녀가 3명인 군무원의 정년은 62세, 하다. 자녀가 4명 이상인 군무원의 정년은 63세로 한다. ---------